

선교지 재산 관리 및 이양에 관한 정책세미나



- 일시 : 2024년 2월23일(금) 오후4시
- 장소 : 본부교회
- 주관 : 기독교대한감리회 본부 선교국



목 차

Ⅰ 인사말	2
- 태동화 총무(선교국)	
Ⅰ 선교지 재산에 대한 선교학적 이해	4
- 장성배 교수(감리교신학대학교)	
Ⅰ 신설 재판법의 취지 및 재판과정	8
- 이흥규 부장(총회행정부)	
Ⅰ 모범적인 모델 소개	9
- 박상철 목사(인천동지방회 예일교회)	
Ⅰ 모범적인 모델 소개	10
- 이상범 선교사(모잠비크)	
Ⅰ 타교단의 상황	16
- 이강희 부장(세계선교정책부)	
Ⅰ 추후방향에 대한 제안	17
- 남수현 부장(세계선교사역부)	

한국선교연구원(KRIM)의 ‘2022 한국선교현황 통계조사’에 따르면 2021년 기준 한국 국적의 장기선교사(2년 이상) 2만 2204명이 파송 국가 169개국에서 사역하고 있는데, 이들 중 50대 이상이 65.5%나 되는 상황이라고 보고하면서, 은퇴를 앞둔 선교사 처우 문제와 함께 재산권 이양 등 한국교회 내에서 합의된 지침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아울러 선교계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정비하지 않으면, 선교지에서 발생하는 재산권 문제를 한국교회가 떠안게 될 수밖에 없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 의식을 가지고 선교지 재산에 대한 논의를 이어오던 기감 선교국은, 2023년 작년에 있었던 두 가지 중요한 결정에 자극을 받아, 오늘 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결정은 23.8.21 한국교단선교실무대표협의회(한교선)와 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가 함께 논의하여 발표했던 <한국 선교 출구전략과 이양 정책을 위한 공동 결의서>입니다. 내용은 다들 아시겠지만, 다시 한 번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는 선교지에서 형성된 모든 선교적 재산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공적 재산임을 인정하고 앞으로도 그 목적대로 사용할 것을 결의한다.]

이 결의는 선교지 재산이 사유화되지 않고 선교적 목적에 따라 현지에서 사용되도록 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고 있는 중요한 결의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결정은 기독교대한감리회 35회 입법의회에서 [선교지 재산과 선교사에 관련된 내용]이 재판법에 신설되었기 때문입니다.

제7편 재판법 제1장 일반재판법, 제4조 교역자에게 적용되는 법과 중 9항

[해외에 파견된 선교사가 국내교회가 설립하여 봉헌하고 지원하는 해외 소재 개척교회를 사전에 설립교회와 협의를 거치지 않고 그 교회와 부속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거나, 선교비를 정당한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횡령하거나 기망 행위로 사취를 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선교지에서 이런 일들이 생기면 교단에서 교역자의 법과로 다루어 처벌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앞으로는 파송교회와 선교사들이 선교지에서 생겨난 재산에 대해 합

법적이고 투명한 관리를 해야 하는 상황이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세미나는 선교지 재산 관리와 이양에 대한 정책의 결론을 도출하거나 발표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오늘 세미나를 통해 기독교대한감리회 선교지 재산에 관련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출발점이고, 이후에 선교국과 선교사회 그리고 파송교회와의 깊은 논의과정을 거쳐서 올해 하반기에는 선교지 재산 관리 및 이양에 관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 지침을 발표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미나가 귀한 도전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선교지 재산에 대한 선교학적 이해

➤ 장성배 교수(감리교신학대학교)

내년 2025년은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온 지 140주년이 되는 해이다. 기독교대한감리회(이하 감리교회)는 한국 기독교의 시작과 함께했기 때문에, 감리교회의 나이도 140세가 되었다. 감리교회는 기독교 역사상 유래를 보기 힘들 정도로 빠른 시간에 자립교회가 되었고, 자립교회가 되기 이전에도 해외선교에 나섰던 교회이다. 1902년에 하와이 이민 선교(홍승하 선교사)가 있었고, 민족의 이동과 함께 동만주, 북만주, 시베리아, 몽고, 일본 지역에 선교사를 파송했었다. 1958년 볼리비아 선교, 1965년 사라왁 선교, 1970년대 태평양 동아시아 지역 선교가 이어졌고,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동남아시아와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으로, 1990년대에는 러시아와 동유럽, 중국 등 옛 공산권 지역으로 빠르게 선교 영역이 확장되었다. 현재는 세계 84개국, 14개 지역에 734가정, 1,325명의 선교사가 활동하고 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감리교회는 수많은 선교사가 한꺼번에 은퇴하는 때를 맞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선교지 재산을 처리하는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되었다. 이 짧은 글은 이번에 신설된 규정에 따라 선교국이 선교지 재산 문제를 다루면서, 이에 대한 선교학적 이해를 돕고자 작성되었다. 짧은 지면에 복잡한 논의를 할 수는 없고, 선교지 재산에 대한 이해를 ① 하나님의 선교의 관점에서 ② 교회의 공공성의 관점에서 ③ 선교의 효율성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고자 한다.

1. 하나님의 선교의 관점에서

세계선교 역사에서 ‘하나님의 선교’라는 표현을 명확하게 사용하게 된 것은 20세기부터였다. 위대한 선교의 시대라고 불렸던 19세기까지, 교회는 하나님께서 선교를 자신들에게 위임하셨다고 믿고, 스스로 선교의 주체인 양 착각했었다. 그 결과 선교지 안에서 교단 간의 갈등, 선교의 중복 투자, 교회의 이미지 추락 등 많은 문제를 양산하게 되었다. 그러던 것이 1910년에 에든버러(Edinburgh)에서 열렸던 세계선교대회를 기점으로 하나님 중심의 선교 신학이 시작되었다. 1930년대에 Missio Dei 신학이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고, 1974년부터 시작된 로잔 운동도 하나님의 선교를 중요한 신앙으로 고백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선교는 선교의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고백에서 출발한다. 그러므로 모든 교단과 선교단체들은 자기의 뜻과 주도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선교에 순종하고 동참해야 한다. ‘하나님의 선교’(Missio Dei, Mission of God, God’s Mission)는 여러 가지 뜻을 포함한다. 첫째는 선교의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뜻이다. 선교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이다. 이는 ‘하나님의 경륜’(God’s Economy)과 연결된다. 둘째는 선교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선교의 권한 또는 결정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다. 이는 하나님의 왕권(God’s Lordship 혹은 Kingship)에 대한 차원이다. 셋째는 ‘소유권’에 대한 차원인데, 선교에 사용되는 모든 교회의 인적 물적 자원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고백이다.

이러한 하나님의 선교는 지극히 성경적인 고백이다.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것은 하나도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무(無)에서 창조되었다. 우리의 육신은 먼지에서 와서 먼지로 사라진다. 다른 표현으로 흙에서 와서 흙으로 사라진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이 땅에서 우리 것으로 생각했던 재산이나 소유들, 지위나 권력, 혈연 지연의 모든 인맥은 이곳에 두고 가야 한다. 이 땅의 모든 것을 제외한 단독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성경의 개념들이 있다. 그것은 ‘청지기,’ ‘사명자,’ ‘무익한 종’과 같은 것들이다. 이는 우리의 소유나 공로를 부정하는 고백이다. 우리는 열심히 일하고도 그것을 우리의 공로로 주장할 수 없다. 다만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반응하는 삶만이 있을 뿐이다. 이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믿음의 반응이고, 사랑받았다는 느낌의 호응이며, 받은 모든 것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선교지의 재산은 당연히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는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재산을 잘 관리하다가, 임기를 마칠 때 하나님 앞에 놓고 떠나야 하는 존재일 뿐이다. 행여나 선교지의 재산이 내 것이라고 주장한다면, 세상 적으로도 도둑이요 강도로 취급받거나 횡령죄에 해당하게 된다. 물론 이렇게 심한 말을 들을 선교사는 없을 것이다. 다만 다른 어떤 주장도 이러한 성경의 관점을 넘어설 수 없다.

2. 교회의 신적 공공성의 관점에서

공공성의 관점에서 선교지의 재산은 교회 공동체의 것이다.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순종하며 함께 관리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the people of God), ‘그리스도의 몸’(the body of Christ)으로 고백 되어 왔다. 이는 세상의 ‘기관들’(institutions)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다. 우리는 인간의 이성으로 설명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신적 공동체를 떠나 혼자서 하는 선교는 존재할 수 없다. 그러므로 선교는 세상 기관들의 공공성과 차원을 달리하는 하나님 안에서의 공공성을 형성한다. 즉 수직적이면서 수평적인 차원을 모두 포함한 공공성이다.

이 관점에서 선교지의 재산은 신적인 차원의 공공성을 갖는다. 이것은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선교지의 재산은 공적 교회 공동체가 함께 관리해야 하고, 선교사의 임기가 끝나면 차기 선교 책임자가 그 일을 이어가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현재 감리교회의 선교사 파송과 관리 시스템은 선교지의 재산에 대해 개교회주의적이고 개인적인 결정을 할 소지가 큰 것이 사실이다. 감리교회의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개인적으로 파송교회와 후원자들을 개발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

해 교단 선교국은 큰 힘이 되어주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리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후원은 교회 공동체의 신적 공공성을 전제로 이뤄진다. 감리교회 선교사라는 공적인 인정이 없이 선교의 후원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제도적인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선교지 재산의 신적 공공성은 분명히 지켜져야 한다.

그런데 교회의 신적 공공성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공동의 책임성도 함께해야 한다. 즉 공적으로 세운 선교사의 삶은 공적인 교회 공동체가 함께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다. 교회의 신적 공공성을 지켜가기 위해서는 공적 사역을 마치고 은퇴하는 선교사들의 삶도 보장되어야 한다. 특히 선교사는 한국에 기반을 두지 않고 사역에 전념해 왔다. 그러므로 은퇴 후 한국에 돌아와 생활의 터전을 만드는데 취약하다. 감리교회는 선교지 재산을 다룰 때 이 문제도 함께 다뤄야 할 것이다.

3. 선교의 효율성의 관점에서

한국선교 초기에 선교에 참여했던 교단들과 선교단체들은 한국 전체의 선교를 위해 다양한 협력 모델을 만들었다. 가장 기본적으로 교단 선교부 산하의 선교사들은 한국 선교를 위해 하나의 정책을 수립하고 선교를 진행했다. 또한 다른 교단들과도 선교 지역의 배분이나 협력 사역들을 통해 통합적 선교를 이루려고 노력했다.

이러한 관점에서 지금의 감리교회 선교를 보면 아쉬운 점이 많다. 특히 한 나라, 한 지역 안에서 선교사들의 협력이 이뤄지지 않아서 중복 투자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지면상 선교지 재산에만 국한해 본다면, 선교사 밀집 지역에서 선교사의 수만 큼이나 많은 선교센터가 세워진 것은 그 한 예가 된다.

필자는 저서 『글로벌 시대의 교회, 문화, 그리고 사이버스페이스』에서 교회 간의 다양한 협력 모델을 제시하면서, ‘개인병원’(clinic) 같은 개인 건물과 ‘종합병원’(hospital) 같은 공동 시설을 운영할 것을 제안했다. 간단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미국에는 종합병원과 개인병원이 확실히 구분된다. 종합병원이 모든 시설을 갖추고 종합적인 업무를 하는 반면에, 개인병원은 사무실 중심으로 개인 의사들이 간단한 치료를 하며 종합병원의 시설을 공유한다. 개인병원은 비싼 시설을 준비하지 않아도 되고, 종합병원은 개인병원의 환자들로부터 수입을 얻게 되는, 공생관계를 형성한다. 또한 그 중간 형태인 ‘그룹 단위의 의료기관’(group practice)들의 수도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들 그룹단위의 병원들은 몇 명의 의사들이 조합을 만들어 수입, 비용, 건물, 도구들, 환자 기록 등을 함께 관리하고 돌아가면서 당직을 맡는다. 이들의 장점은 여러 명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환자들에게 보다 효과적인 의료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혼자 의료행위를 할 때의 약점을 보완할 수 있고 위험부담도 줄일 수 있다. 미국에만도 이러한 그룹들이 15,000개가 넘으며, 대략 140,000명의 의사들이 이곳에서 일을 하고 있다.¹⁾

1) 장성배 지음, 『글로벌 시대의 교회, 문화, 그리고 사이버스페이스』(서울: 성서연구사, 2001), 157.

이러한 건물과 시설의 효율적 사용과는 반대로 한국교회나 이를 복사한 선교지의 선교사들은 회중의 크기와 관계없이 종합병원과 같은 시설을 보유하기 위해 경쟁하듯이 시설을 확장해 왔다. 이는 하나님의 선교적 관점에서 보면 엄청난 힘과 자원의 낭비가 아닐 수 없다. 차라리 작은 회중은 clinic과 같이 간단한 시설과 특화된 활동에 전념하고, 친교와 제자화에 집중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더 큰 활동을 위해서 공동의 건물을 유지할 수 있다. 이 큰 시설은 모든 선교사가 함께할 수 있는 장소로서, 다목적으로 사용되는 공간이면 좋겠다. 이러한 시설이 지역사회의 필요에도 응할 수 있다면, 더 큰 차원의 선교를 이뤄갈 수 있다. 그 예로 한국선교 초기의 YMCA가 한국사회를 향해 기여했던 것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시도는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진다. 첫째, 비싼 건축비를 줄일 수 있고, 둘째, 함께 관리할 수 있으며, 셋째, 자원의 낭비를 줄일 수 있고, 넷째, 지역을 위한 건물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은 지역을 섬기는 교회 선교의 상징물 역할을 할 수도 있다. 그 외에도 이러한 시도는, 목사와 평신도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열린 상태에서의 협동 묵회는 서로에게 유익을 줌으로써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서로 간의 다양한 달란트를 공유함으로써, 작은 교회들이 서로 돕는 기회를 가질 수도 있다.²⁾

이 발제는 감리교회가 선교지 재산에 대해 논의를 시작하면서 선교학적 관점을 덧붙이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 발제자는 이것을 ① 하나님의 선교의 관점에서, ② 교회의 신적 공공성의 관점에서, ③ 선교의 효율성의 관점에서 설명해 보았다. 앞으로 더 광범위한 차원에서 깊은 논의가 일어나기를 바란다.

2) 위의 책, 158.

신설 재판법의 취지 및 재판과정

➤ 이홍규 부장(총회행정부)

교역자(선교사)에게 적용되는 법과

【1404】 제4조(교역자에게 적용되는 법과) 교역자에게 적용되는 법과는 다음 각 항과 같다.

- ⑨ 해외에 파송된 선교사가 국내교회가 설립하여 봉헌하고 지원하는 해외 소재 교회 및 시설을 사전에 설립교회와 협의를 거치지 않고 그 교회와 부속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거나, 선교비를 정당한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횡령하거나 기망행위로 사취를 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신설>

※ 조항이 신설된 이유 :

- 1) OO교회 소속 선교사가 국내교회 지원을 받아 설립한 선교지의 교회 또는 재단(부속재산 등)을 은퇴하면서 교회와 협의하지 않고 처분한 일이 발생하여 신설된 조항

모범적인 모델 소개

➤ 박상철 목사(인천동지방회 예일교회)

선교지의 재산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선교지의 재산 관리는 나라마다 다르기에 상황에 따라 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재산을 관리를 하되 개인 재산이 되지 않고, 교회 공동체의 재산이 되도록 등록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재산 관리는 전적으로 선교사의 신앙 양심에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선교사 본인이 그 나라의 형편을 잘 알기에 그 나라 법에 따라 해야 할 것이고, 재산을 개인의 것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재산의 문제도 신뢰입니다. 서로 신뢰가 이루진다면 재산 문제도 쉽게 해결되리라 봅니다. 저희 교회는 지난 27년 동안 모잠비크를 섬겼습니다. 선교사에게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그 나라 법을 잘 알기에 그대로 맡겼습니다. 재산 문제도 서로 믿고 신뢰할 때 쉽게 해결되리라 봅니다.

모잠비크는 종교청에 한국 선교회로 등록을 했습니다. 모든 재산을 한국 선교회 이름으로 했습니다. 교회의 모든 재산은 모잠비크 감리교회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것을 대비하여 현지인 마음대로 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모잠비크 감리교회의 대표자를 임명하는 권한은 예일교회 담임목사가 하는 것으로 정관에 명시를 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현지인이 대표자이지만 함부로 할 수 없도록 법적인 장치를 해 놓았습니다. 선교사가 모든 위원회에 함께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지만 장치를 해서 견제함으로 문제될 소지가 없도록 안전장치를 해 뒀습니다.

현재 모잠비크의 한국 선교회 및 모잠비크 감리교회의 재산은

1. 티라노 신학교 및 교회본부 선교회 사무실(3천평)
2. 성산중고등학교(일만 삼천평)
3. 마구디 초등학교(오천평)
4. 이랜드중고등학교(베이라)
5. 대학교(6만6천평, 현재 건축중)
6. 농업훈련원 및 농장(건물 및 토지, 사탕수수 농장, 캐스넛, 사료공장) (현재 사용 삼십만평)
7. 마푸두한인교회 및 선교 센터(육백평)
8. 상가건물.
9. 건축된 교회 및 개척한 교회(120교회) 자립

모범적인 모델 소개

➤ 이상범 선교사(모잠비크)

1. 사역 국가 : 모잠비크 (남부 아프리카)
2. 모잠비크내 감리교 선교사 파송현황 : 6가정
(초교파적으로 한국인 선교사 총 10가정, 2023년 12월 현재)
3. 모잠비크내 감리교 선교사 관련동역 단체
 - * 5가정 - 한국선교회 / 모잠비크 감리교회
 - * 1가정 - 모잠비크 웨슬레아나 감리교회
4. 선교회 사역 (한국선교회 중심으로)
 - * 복음 / 교육 / 개발 / TM (BAM)
5. 한국선교회 팀사역 가정
이상범(1997, 예일, 박상철 목사) 김민정(2009, 인천성산, 최상용 목사) /
이승철(2012, 인천성산, 최상용 목사) 이민영(2012, 성지, 백승규 목사) /
김광희 강명우(2015, 기둥, 고신일 목사) /
송요한 한혜영(2023, 운서, 강희욱 목사) /
류지만 박민경 (2010, 2015, 대전산성, 지성업 목사) /
베니시우, 귀다(2007, 모잠비크감리교회, 브라질GP)
6. 한국선교회 법인 등록
이사장 : 박상철 목사

[한국선교회 현지 선교부 : 법인증 등록자-갱신 진행중]

Director : 이상범 선교사

사무총장 : 김광희 선교사

회 계 : 김민정 선교사

자 문 : 류지만 선교사, 베니시우 선교사(모잠비크 국적취득 선교사)

7. 한국선교회 사역내용 및 관련 자산 및 부동산 보유 현황

	사역내용	대지	부속건물	후원교회	재산등록
1	선교센터	454평	선교사 숙소 4채 (3층), 한인교회(2층)	예일교회	한국선교회
2	모잠비크 감리교회 (한국선교회에 의하여 개척 설립된 교회)		43교회 건축(벽돌) / 총 136 교회	기독교회, 예일교회, 성산교회, 삼봉교회, 참빛교회, 좋은교회, 양원교회, 성서교회, 대전산성교회 (교회부지내 교실) 인천동지방 여선교회,	한국선교회 모잠비크 감리교회
3	두란노신학교	4,950평	강의실 3, 기숙사 6, 사무실 3, 사택 3, 교회,식당, 창고 4, 목공실, 철공소	예일교회	한국선교회
4	성산중고등학교	10,560평	교실16, 행정실, 교무실, 과학실, 도서관, 체육관, 채플실, 매점	성산교회, 월드휴먼브릿지 (운영지원)	한국선교회
5	이랜드중고등학교	9,900평	교실 12, 행정실 , 사택	(주)이랜드 예일교회 (운영지원)	한국선교회
6	마구디초등학교	4,290평	교실 4, 작은 사무실	NGO GOAL (아일랜드) 예일교회 (운영지원) 문서교회(운영지원)	한국선교회 (이전)
7	대학교	66,000평	건축중	예일교회, 방주교회, 인천동지방, 개인후원	한국선교회
8	새마을 농업훈련원	16,500평	강의실 4, 행정동, 식당, 기숙사 4, 사료생산 창고, 장비관리 창고, 양계장 3, 양돈장	예일교회, KOICA, POSCO, 기아대책	한국선교회
9	새마을 농장 (BAM)	151,000평	사탕수수 농장, 캐슈넛 농장	예일교회	한국선교회
10	성산 직업훈련원		강의실1, 실습실, 창고 및 장비관리실, 행정실 및 교무실	성산교회, KOGAS 예일교회 (운영지원)	한국선교회

8. 선교활동의 목적 및 선교지 재산의 관리, 유지를 위한 장치

- 한국선교회내의 자산은 예일교회를 포함하여 기독교대한감리회 여러 교회와 정부, 기업, 단체, 개인의 후원을 통하여 구입 혹은 건축되어 졌음.
- 1) 모든 자산은 법인이름으로 등록되어져 있음.
- 2) 선교회를 통하여 세워진 모든 기관은 각각의 운영 규정이 있고, 한국선교회 지도를 받도록 규정 제정.
- 3) 선교회의 Director를 기독교대한감리회에서 임명하도록 법인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합부

로 현지 디렉터를 바꿀수 없도록 규정하므로

불순한 의도를 가진 현지인 혹은 현지 상황으로부터 선교의 목적과 선교지 재산을 보호 하려 노력함.

- 4) 선교지 자산 매각 혹은 명의 변경에 관련된 사항은 한국선교회 정관에 정확히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모잠비크 법에 따라서 법인의 자산 매각 혹은 명의 변경은 선교부의 동의와 동의한 회의록을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선교회 정관상 기독교대한감리회의 허가 가 있어야 한다.

5) 모잠비크 감리교회 (2005년 종교국 등록)

- 모잠비크 감리교회는 법무부 산하 종교국에 독립된 기관으로 등록되어 있고 총회가 구성되어져 있으며, 한국선교회와 기독교대한감리회에 의해서 설립된 교회임이 모잠비크 감리교회법에 명시되어 있음.
- 모잠비크 감리교회가 일정한 영적, 목회적, 재정적 자립을 이루기 전까지는 한국선교회의 지도하에 있으며, 한국선교회의 디렉터는 모잠비크 감리교회 총회 임원의 임명권을 가진다. (모잠비크 감리교회법에 규정)
- 모잠비크 감리교회의 완전한 자립과 독립은 한국선교회 선교부의 판단과 결정에 기인한다. (모잠비크 감리교회법에 규정)
 - >>> 한국선교회는 모잠비크 감리교회 총회 임원의 임명권과 목회적 지도를 통하여 모잠비크 감리교회의 자산관리 및 교회의 이탈 방지책 마련
 - >>> 한국선교회는 각 도별로 책임선교사를 파송하여, 모잠비크 감리교회의 목회를 돕고 지도함.
 - >>> 한국선교회 선교사들과 총회 임원의 정기 모임을 통하여 목회 사안을 협의함.
- 모잠비크 감리교회의 건축된 교회들은 한국선교회 또는 모잠비크 감리교회로 등록, 구입되어 있다.
(지방정부 행정력의 부재와 지방 교회 지도자들의 행정력 부족으로 인하여 등록 자체도 쉽지 않음.)

8. 한국선교회 정관 (모잠비크 종교국 등록/ 모잠비크 관보에 게재)

법인명 : 한국선교회 (Missão da Coreia)	등록기관 : 모잠비크 법무부 / 종교국	정부 등록 : 2002년
Artigo 2 (Natureza Jurídica) 1. A Missão da Coreia (doravante “a Missão”) é uma instituição religiosa cristã de promoção do Evangelho do Senhor Jesus Cristo (Mateus 28:18-20; Marcos 16:15-19); A Missão da Coreia é uma instituição filantrópica estabelecida e regida pela Igreja Metodista Coreana operando sob sua orientação, fiscalização e direcção.		

제2조 (법적 성격)

1. 한국선교회(이하 “선교부”)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기독교 기관이다. (마태복음 28:18-20, 마가복음 16:15-19).

한국선교회는 기독교대한감리교회에 의하여 설립되고, 기감의 감독과 지도하에 운영되는 기관이다.

Artigo 3 (Âmbito, Sede e Duração)

1. A sede internacional da Missão está situada na República da Coreia, Cidade de Seul, Sejong-Daero, Jongro-Gu, Prédio Metodista, 16.^o andar; Em Moçambique, a sua sede encontra-se na Província de Maputo, Distrito de Marracuene, Bairro Guava, Quarteirão 23, Casa 89;

제3조 (범위, 본부 및 기간)

1. 선교회의 국제 본부는 대한민국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감리교관 16층에 있다. 모잠비크의 본부는 마푸토주, Marracuene 군, Bairro Guava, Quarteirão 23, Casa 89에 위치한다.

Artigo 6 (Deveres da Missão)

1. Operar em alinhamento com a orientação e liderança da Igreja Metodista Coreana, seguindo as diretrizes e princípios estabelecidos pela Igreja;

2. Obedecer e contribuir para a realização dos objetivos gerais da igreja Metodista Coreana;

3.

4. Manter boas relações com a Igreja Metodista Coreana, e com os seguidores da fé metodista em Moçambique.

제6조 (선교회 업무)

1. 기독교대한감리회가 정한 지침과 원칙에 따라 기독교대한감리교회의 지도와 안내를 받아 직무를 수행한다.

2. 기독교대한감리교회의 전반적인 목적에 순종하고 그 목적 성취에 기여한다.

3.

4. 기독교대한감리회 및 모잠비크내의 감리교 산하의 단체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한다.

Artigo 12 (Competências do Director)

1. Gerir património da Missão, podendo delegar funções práticas da gestão a outro membro da Missão;

2. O Director é nomeado pela Igreja metodista coreana e o representante máximo em mocambique

제12조 (디렉터의 역할)

1. 선교회의 자산을 관리하고, 실질적인 관리 기능을 선교회의 다른 구성원에게 위임할 수 있습니다.

2. 디렉터는 기독교대한감리교회에 의하여 임명되며, 모잠비크 최고의 대표가 된다.

Artigo 16 (Património)

1. Considera-se património da Missão o conjunto de bens, imóveis, adquiridos por meio de compra, doações, e ou colocados à disposição da Missão pela sede internacional e **registados em Moçambique em seu nome;**

2. Todas as formas de organização, tais como centro de formação, escola, universidade, e outras organizações criadas pela Missão, pertencem-na e reger-se-ão por regulamentos

competentes que vão determinar o relacionamento individual de cada uma com a Missão;

제16조 (재산)

1. **선교회 자산**은 구매, 기부를 통해 취득하거나 국제 본부에서 선교회에 제공하여 세운 것으로 모잠비크에 등록되고, **법인이름으로 등록된 자산, 부동산으로 한다.**

훈련원, 학교, 대학, 선교회가 설립한 기타 조직 등 **모든 형태의 조직은 선교회 법인에 속하며, 각각의 기관은 선교회와 결정하는 관련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Artigo 17 (Casos omissos)

Cabe ao Director da Missão esclarecer os casos omissos sob orientação da Igreja Metodista Coreana, se necessário.

제17조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안)

선교회의 디렉터는 필요한 경우 기독교대한감리교회의 지도하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을 명확히 한다. (재산의 처분, 이양등..)

Artigo 18 (Revisão de estatutos)

1. A Constituição da Missão pode ser revista ou alterada depois do debate sobre a matéria entre o director da Missão, o secretário-geral e tesoureiro geral e conselheiros para poder-se ter uma administração eficiente.

2. Qualquer alteração ou acréscimo de mais um ponto no documento geral da Missão deve ter uma aprovação dos órgãos da Direcção da Missão em Moçambique e da Igreja Metodista Coreana.

제18조 (법령 재검토)

1. 선교회의 정관은 효율적인 행정을 위하여 선교부장, 총무, 총재무 및 보좌관 간의 심의를 거쳐 개정 또는 개정될 수 있다.

2. 정관을 추가하거나 변경하려면 선교부와 기독교대한감리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Artigo 19 (Extinção e liquidação)

Em caso de extinção e liquidação serão obedecidos os trâmites legais vigentes na República de Moçambique, sempre pelo orientacao da Igreja Metodista Coreana.

제19조 (소멸 및 청산)

소멸 및 청산될 경우, 기독교대한감리교회의 지도하에 모잠비크 공화국에서 시행되는 법적 절차를 따르게 됩니다.

9. 선교 지도력 및 사역지 지속과 이양

1) 한국선교회의 사역은 팀사역(공동사역)을 지향하며, 구성원은 기독교대한감리회 선교사들로 이루어져 있다.(브라질선교사-모잠비크감리교회)

2) 한국선교회 선교사들은 한국선교회 사역을 후원하는 교회에서 파송된 선교사들로 구성되어 있다.

>>> 한국선교회는 단순한 선교사들의 선교부가 아니고, 한국의 후원교회들의 선교지 연합이라고 볼 수 있다.

>>> 한국선교회의 자산은 주로 선교사들의 후원교회의 후원으로 세워진 자산들이다.

3) 한국선교회 사역지는 선교부의 주도하에 지속 공동 운영될 것이며, 선교부의 현지 상황

판단을 통하여 기독교대한감리회의 동의를 얻고, 각 사역지의 현지인 이양을 진행하게 될 것이다.

10. 기타

- 1) 선교지의 재산관리라는 측면에서 한국선교회 법인 정관 및 각 사역지들의 내부 규정, 모잠비크 감리교회법 등을 살펴보았을 때, 모든 규정들은 선교사들의 지위 공고화를 통한 현지인 혹은 특정인으로부터 재산을 보호하는데 집중되어져 있다.
- 2) 후임 선교사들 혹은 현지 사역자들에게로 이양에 관한 구체적인 정관은 아직 마련하지 못하였고, 이후에 정관 수정 등을 통하여 선교지 및 교회의 이양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규정을 마련해야 할 사안이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선교지 현지 리더십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전제 되어야 만이 성숙한 사역지 이양이 가능하리라 생각된다.

타교단의 상황

➤ 이강희 부장(세계선교정책부)

1. 선교지 재산에 관련한 오랜 기간 수많은 논의들

2. 각 교단마다 내규와 시행세칙에 선교사 재산관리 명시

기독교대한감리회 - 선교사관리규정과 시행세칙

제14조(선교사 재산관리)

- ① 선교지에 있는 모든 재산은 선교국 산하에 두며 선교지 특성상 선교사가 관리토록 하나 선교사가 임의로 처분, 정리, 매각, 증여, 교환할 수 없다.

단, 선교지 재산과 관련하여 변경사항이 발생될 시에는 소속교회, 후원교회 또는 후원단체의 협의하에 선교국의 승인을 받은 후 처리토록 한다.

불이행시 선교국은 선교사 행정관리위원회를 소집하여 행정 처리방안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소속교회와 연회, 후원단체에 통보하여 정리토록 한다.

- ② 선교사가 선교활동과 관련해 구입하는 모든 재산은 개인 명의로 구입할 수 없으며 선교단체 또는 재단 명의로 구입하여야 한다.

- ③ 선교사는 재산등록과 관련된 모든 서류를 복사하여 선교사회와 선교국에 각각 1부씩 제출하여 보관, 관리토록 한다.

3. 선교계의 문제 - 수많은 논의와 연구와 결의는 계속되어 왔지만, 선교지 재산 관리가 실재적이고 효과적으로 시행되지는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4. 기독교대한감리회 - 늦었지만 교역자 법과 재판법 신설로 본격적으로 선교지 재산 관리 및 이양 문제를 다루고자 한다.

5. 추후 계획

- 1) 선교지 재산 관리 및 이양에 관한 공청회 개최
 - 선교국과 파송교회와 선교사의 합의된 지침 마련
- 2) 선교지 재산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

선교지 재산은 선교의 근본 목적대로 사용되어야 하고, 투명하게 관리 이양되어야 하기 때문에, 실제적이고 효과적인 지침을 마련하고 실행하는 것은 선교국과 파송교회와 선교사회의 책임이다.

추후방향에 대한 제안

➤ 남수현 부장(세계선교사역부)

1. 선교사의 재정정책의 필요성

- ▶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 ▶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
- ▶ 성경의 재정에 대한 가르침은 물질주의 세속적 가치관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어렵다는 사실을 반증하고 있다.
- ▶ 우리의 출발점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에서 출발해야 한다.”

2. 선교지 재산의 정의

1) 부동산과 동산으로 구분하는 경우

- ▶ “국내외 교회의 단체(개인)들의 헌금으로 선교목적을 가지고 구입한 부동산 일체와 선교비로 구입한 선교장비 일체”
- ▶ 부동산 자산의 예: 교회, 사택, 선교센터, 신학교, 기숙사, 고아원, 교육관, 훈련원, 기타 부속건물과 대지
- ▶ 동산의 예: 선교장비, 차량, 고가장비 등을 포함

2) 유형의 재산과 무형의 재산으로 분류하는 경우

- ▶ 유형의 재산의 예: 동산, 부동산 유형의 재산
- ▶ 무형의 재산의 예: 지적 재산권과 같은 선교지에서 발생한 모든 권리와 소유권에 따른 이권들

“모든 선교지 재산은 공적 재산이며 하나님 나라를 위한 공적 재산임을 인정해야 한다.”

3. 선교지 재산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

- ▶ 선교사는 선교지 재산의 관리인이자 청지기이다.

청지기 의식(Stewardship)의 재확립

“모든 재정은 내 돈이 아니다”

청지기에게는 재산의 소유권은 없고, 사용권만 있다.

재산권의 근원은 하나님이며, 선교사는 관리자일 뿐, 관리자로서의 무한한 책임이 있다.

→ 투명성(transparency)과 책임의식(accountability)

4. 선교지 재산 관리를 위한 정책제안

1) 현지 재산의 공적 재산과 사적 재산을 구분하여야 한다.

감리회는 과연 선교사의 선교지 사적 재산 형성을 인정할 것인가?

[세계선교사관리규정 제14조 선교사 재산관리]

②항 선교사가 선교활동과 관련해 구입하는 모든 재산은 개인 명의로 구입할 수 없으며 선교단체 또는 재단 명의로 구입하여야 한다.

2) 공적 재산 혹은 선교재산은 적절한 시기에 적합한 현지교회나 단체에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현지교회(단체)에 선교지 재산의 이양은 선교사가 중도에 선교지 변경하거나 은퇴로 선교지를 떠나는 경우에도 사역이 중단되지 않고 지속된다는 장점과 안정성을 보장한다.

3) 선교지 재산 취득 시 계약서 및 문서 작성에 있어서 재정의 투명성을 담보하여야 한다. 특별히 재산 취득에 있어서 준비시기부터 사역과 프로젝트의 필요성, 모금의 단계와 목표, 사업의 시작과 단계에 대한 후원자와 선교사 간의 상호 검토와 확인, 공적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4) 소유권의 문제를 각별히 다루어야 한다.

① 소유권이 선교사 개인에 있는가?

② 후원교회나 기부한 단체나 기관에 있는가?

③ 현지교회 또는 현지법인에게 있는가?

5) 등기와 소유권에 대한 구분과 계획이 필요하다.

① 개인명의로 등록할 수 없다.

② 현지 법인 설립을 통한 공동명의 (현지인+선교사+후원교회)

③ 불가피하게 개인명의로 등록해야 하는 경우

- 법률자문, 포기각서 징구, 공증 등 필요한 법적 조치를 강구하고 후원교회는 법적 조치에 필요한 비용 또한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④ 현지교회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 - 소유권은 현지교회에 두되 선교사가 체류하고 관리하는 동안 관리권을 선교사에게 두도록 현지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MOU 체결)

- 6) 선교본부는 선교지 재산에 대해 중요 자산 보유현황을 파악하고 필요하다면 관리대장을 만들어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선교사 재산 관련 불미스러운 소송을 예방하여야 한다.

■ 감리회 선교지 부동산 상세 내역서 ■

※ 부동산이 다수일 경우는 개별부동산마다 「부동산 상세내역서」를 각각1부씩 작성바랍니다.

* 부동산 일반 현황

부동산의 종류		건물형태(단층,2층, 복층, 슬라브, 기타)	토지(대지, 낙대지, 임야, 농, 밭 등)
사용종도 (공회,공공관,사택 등)			
주소			
면적(m ²)	대지	㎡	
	건물	1층: 2층: 기타: 합계(면적) m ²	공 관
구분		매입 / 임대 / 상속	
구입(임대)내역		구입(임대)년도	구입(임대)금액
동기내용		없인명: 동기인 성명: 실소유자:	
매입(임대)동기		내 용	
- 사업적 필요			
- 개인적 필요			

* 부동산 매입(임대) 자금 현황

매입(임대)금 출처	회사 후원	
	개인 후원	
	개인 차입	
	기타 (금융기관 대출 등)	
합 계		KW/USD

* 부동산 이양 계획

현지법인	
현지교회	
기타	

위의 기록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일 년 월 일

소속: 성명(부부):

7) 재산의 처리에 있어서 가장 이상적이며, 가장 선호되는 방법은 현지교회(기관, 단체)로의 이양이다. 이양의 과정에서 매도, 증여, 교환, 양도 등의 절차는 반드시 후원교회와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또한 이양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금액(양도세, 공증, 변호사비용 등) 또한 이양 비용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상호간의 적절한 이해와 승인이 요청된다.

8) 선교사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재산권 다툼은 대체로 선교사의 노후 복지 준비 미비와 적절한 은퇴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경우 빈번하게 일어난다. 이를 위해 선교사들이 자신의 재산권을 가질 수 있는 길을 모색하거나 선교지 재산의 처분 과정에서 선교사의 노후대책을 위한 비용을 고려하는 것도 필요하다.